

1. 개정이유

복합기와 비데가 대기전력저감대상 품목에서 효율등급제 대상으로 이관예정임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대상품목 조정 필요

2. 주요내용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2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 제품 제4호(복합기), 제17호(비데)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0000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14조(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)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(이하 “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삭제
2. 삭제
3. 프린터
4. 삭제 <2024. 0. 00.>
5. 삭제
6. 삭제
7. 전자레인지
8. 팩시밀리
9. 복사기
10. 스캐너
11. 삭제
12. 오디오
13. DVD플레이어
14. 라디오카세트
15. 도어폰

16. 유무선전화기

17. 삭제 <2024. 0. 00.>

18. 모뎀

19. 홈 게이트웨이

②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시험기관 또는 자체측정의 승인을 받은 자가 측정할 수 있는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종류, 측정 결과에 관한 시험성적서의 기재 사항 및 기재 방법과 측정 결과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부 칙 <제00호, 2024. 00. 00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4조제1항제4호 및 별표 2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14조제1항제17호 및 별표 2 제17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(제13조제1항 관련)

1. 삭제 <2022. 1. 26.>
2. 삭제 <2022. 1. 26.>
3. 프린터
4. 삭제 <2024. 0. 00.>
5. 삭제 <2012.4.5>
6. 삭제 <2014.2.21>
7. 전자레인지
8. 팩시밀리
9. 복사기
10. 스캐너
11. 삭제 <2014.2.21>
12. 오디오
13. DVD플레이어
14. 라디오카세트
15. 도어폰
16. 유무선전화기
17. 삭제 <2024. 0. 00.>
18. 모뎀
19. 홈 게이트웨이
20. 자동절전제어장치
21. 손건조기
22. 서버

23. 디지털컨버터

2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기전력의 저감이 필요하다고
인정하여 고시하는 제품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	
연 락 처	(044) 203 - 5146